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주택관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 12. 29.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분 야	채용직급	채용기간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주택관리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간 (주 35시간)	1명	○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 상담 및 처리 ○ 공동주택 관련 분쟁 조정 ○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감사 지원 운영 ○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 ※ 1.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2.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3.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3(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별표 13, 제35조(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3.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20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 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선발방법(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자격기준 요건 등)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시 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1. 12. 29.(수) ~2022.01.10.(월)	2022.01.06.(목) ~ 01.10.(월)	2021. 1. 18.(화)	2021. 1월 중	2021.1월 말

※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seo.incheon.kr) 채용소식란에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01. 06.(목) ~ 2022. 01. 10.(월)

다. 응시원서 접수처 : 서구청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 주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동봉
-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032-560-4104)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

7. 보수 및 복무조건

가. 보수

-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연봉액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7급 상당)	38,949천원	44,514,000원 × 100% × 35/40시간

- 연봉외 급여(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조건

구 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7급 상당)
근무기간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소 속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근무시간	주 35시간
복무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약정해지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 응시수수료 : 가급 10,000원, 나급,다급, 7,000원, 라급,마급 5,000원
- 방문접수 :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 등기우편 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나. 이력서 1부 <서식2>

- A4용지 소정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3,서식4>

- A4용지 1~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 <서식 5>

마. 경력증명서 1부.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기재)
-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 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 2021. 2. 16.)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6>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서식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현주소,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8>

카.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부 <서식9>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 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 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총무과 인사팀(☎032-560-4104)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주택과 주택조사팀(☎ 032-560-3122, 3124)